# 2024학년도 2학기 미등록 제적예정자 추가등록 안내

URL: https://www.kongju.ac.kr/bbs/KNU/2133/340378/artclView.do 작성일자:2024.11.05

2024학년도 2학기 미등록 제적예정자 추가등록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- 등록기간: ? **24.** 11. 12.(화)~11. 14.(목) **09:00~16:00 <**은행 업무시간 내>
- ※ 등록금 고지서는 ? 24. 11. 11.(화) 09:00부터 조회 및 출력 가능
- 안내사항
- 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납부기간 내 등록 처리를 완료하여야 함
- 등록 기간 중 등록 처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적 대상이므로 미등록 제적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

붙임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자료 1부. 끝.

#### **Attachments:**

• https://www.kongju.ac.kr/bbs/KNU/2133/548005/synapView.do

##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

### ■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기간

납부 대상	고지서 출력 기간	등록금 납부 기간
■ 재학생(차등납부 대상 제외) 및 재입학생	'24. 8. 23.(금) 09:00	'24. 8. 26.(월)~8. 29.(목)
■ 분할납부 대상(1차)	~ 8. 29.(목) 16:00	09:00 ~ 16:00
■ 복학생 ※ '24. 8. 31.까지 복학 '승인'이 완료된 자 ■ 미등록 재학생 추가 등록(1차)	'24. 9. 3.(화) 09:00 ~ 9. 5.(목) 16:00	'24. 9. 4.(수)~9. 5.(목) 09:00 ~ 16:00
<ul> <li>복학생         ※ '24. 9. 20.까지 복학 '승인'이 완료된 자</li> <li>차등납부 대상(수업연한 초과자, 수료후 연구생)</li> <li>분할납부 대상(2차)</li> <li>미등록 재학생 추가 등록(2차)</li> </ul>	'24. 9. 25.(수) 09:00 ~ 9. 27.(금) 16:00	'24. 9. 26.(목)~9. 27.(금) 09:00 ~ 16:00
<ul> <li>복학생</li> <li>※ '24. 9. 20.이후 복학 '승인'이 완료된 자</li> <li>분할납부 대상(3차)</li> <li>미등록 재학생 최종 등록(3차-최종)</li> </ul>	'24. 10. 15.(화) 09:00 ~ 10. 17.(목) 16:00	'24. 10. 16.(수)~10. 17.(목) 09:00 ~ 16:00
■ 분할납부 대상(4차)	'24. 11. 11.(월) 09:00 ~ 11. 14.(목) 16:00	'24. 11. 12.(화)~11. 14.(목) 09:00 ~ 16:00

### ■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방법

 $\bigcirc$  포털시스템 → 로그인 → 통합정보시스템 → 등록 · 장학 → 등록금조회 → 고지서출력

※ 등록금 고지서는 개별 발송(우편, 전자메일, 팩스 등)하지 않습니다.

○ 등록금 고지서는 고지서 출력 기간에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
[자주묻는질문 ①] 복학생인데 고지서 조회가 안됩니다. / 고지서에 책정 금액이 없습니다.

➡ 복학생은 복학 승인일에 따라 등록금 납부 기간이 다릅니다.

복학 승인일별 등록금 납부 기간(p. 1)을 참고하여 본인의 납부 기간에 고지서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.

[자주묻는질문 ②] 등록 휴학 후 이번 학기에 복학했는데 고지서 조회가 안됩니다.

- ➡ 등록 휴학 후 복학생은 등록금 고지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.
- ➡ 복학 승인이 완료된 경우 학기 초에 재무과에서 일괄 등록 처리할 예정입니다.
  - ※ 등록금 인상 등으로 등록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분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➡ 학자금 대출을 위한 <u>기등록 처리가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과(☎041-850-8051)로 문의</u>하시기 바랍니다.

[자주묻는질문 ③] 국가장학금 대상에 선정되었는데 고지서에 장학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➡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 금액이 미반영된 경우에는 <u>장학금 직접 지급(사후지급) 대상자이므로 먼저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등록 여부가 확인된 후 장학 대상자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</u>입니다.

### ■ 등록금 납부 방법

[자주묻는질문 ④] 납부금액이"0원"인 경우 등록 방법 <2024학년도부터 적용>

- [PC] 통합정보시스템 > 등록 · 장학 > 등록금조회 > <u>"전액 장학생 등록처리(0원 등록)"</u> 클릭
- [수납은행 방문]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수납 은행에 방문하여 고지서 제출 후 수납인 도장 받기
- [인터넷뱅킹] : 은행별 인터넷뱅킹 등록금 납부 방법(p. 3)에 따라 등록 처리
- **[학생회비 납부]** 학생회비(15,000원) 납부 시 자동 등록 처리
- ※ 신용카드는 납입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(실제 납부금액이 "0원"인 경우 이용 불가)

[자주묻는질문 ⑤]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. / 학생회비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습니다.

- ➡ 학생회비는 **자율경비**이며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**등록금과 학생회비를 합산한 금액**을 납부하면 됩니다.
- ➡ <u>학생회비 추가 납부 또는 학생회비 납부 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총학생회 사무실(☎041-850-8785)로 연락</u>하시기 바랍니다.
- 은행창구 납부 :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국민은행, 농협중앙회, 우체국, 하나은행 전국지점에서 납부
- 가상계좌 납부 (인터넷뱅킹, 폰뱅킹, CD/ATM 등)
-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(※ 부모 등 타인 명의로 입금 처리 가능)
- 가상계좌 납부 시 예금주가 학생 이름이 맞는 지 확인 후 납부 요망
  - ※ 가상계좌 예금주 : ○○○공주대학교(국민은행), ○○○(농협은행/우체국), 공주대○○○(하나은행)
- 신용카드 (농협카드, 하나카드)

### ① 농협카드

구분 납부방법	
■ 농협은행(농협중앙회) 방문	등록금 고지서 및 신용 카드를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결제
	※ 카드 명의자가 직접 방문하여 결제
■ 농협은행 홈페이지	① <개인> 인터넷뱅킹 → ② 공과금 → ③ 대학등록금 →
	④ 대학등록금 납부 →
	③ 대학명 '공주대학교(신·재학생)' 또는 '공주대학교(대학원생)'
	※ '공주대학교천안공과대학' 선택 시 납부 불가
	⑥ 이름 및 학번 입력 → ⑦ 신용카드 선택 후 결제

#### ②하나카드

구분	납부방법
	① 하나카드 홈페이지 또는 하나Pay→ ② 라이프 → ③ 자동납부 →
■ 하나카드 홈페이지	④ 대학등록금 납부서비스(수시납부) → ⑤ 신청(납부) →
	⑥ [지역] 충청남도 / [학교명] 공주대학교 / [학번] 입력 →
	⑦ 등록금 + 자율경비(학생회비) 납부 정보 확인
■ 하나Pay(하나카드)	※ 학생회비 납부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체크박스 해제
	⑧ 결제카드 정보입력 → ⑨ 신청

### ○ 인터넷뱅킹 납부

은행명	이용 절차
국민은행	① http://www.kbstar.com 접속 및 로그인 → ② 개인뱅킹 → ③ 공과금 →
	④ 대학등록금 → ⑤ 대학교: 공주대학교(학교코드 230), 학번 및 성명 입력 → ⑥ 조회
	① http://banking.nonghyup.com 접속 및 로그인 → ② 개인 인터넷뱅킹 → ③ 공과금 →
농 협	④ 대학등록금납부 → ⑤ 대학명 '공주대학교' 조회(신·재학생 또는 대학원생 선택) →
	⑥ 학번 입력 → 확인 ※ '공주대학교천안공과대학' 선택 시 조회 및 납부 불가
	① http://www.epostbank.go.kr 접속 및 로그인 → ② 예금 → ③ 공과금 →
우체국 	④ 대학등록금 → 대학명 찾기(공주대학교)
하나은행	① http://www.hanabank.com 접속 및 로그인 → ② 개인뱅킹 → ③ 공과금 →
	④ 대학등록금 → ⑤ 원화

### ■ 등록금 납부 결과 확인 및 납입 확인서 발급

- <u>등록납부 익일 오전 10시부터 납부 결과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가능</u>
- 통합정보시스템 → 등록·조회 → 등록금 조회 → 등록 여부 확인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발급 ※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서류는 본인 발급이 원칙이며 개별 발송(전자메일, 팩스 등)하지 않습니다.

### ■ 등록금 분할납부

○ **신청 대상자:** 학부 또는 대학원 재학생 ※ 신·편입생, 재입학생, 휴·복학생, 등록학기 초과자, <mark>전액 학자금 대출자</mark> 및 전액 장학생 신청 불가

### ○ 신청 기간 및 방법

- 공주대학교 홈페이지 > 정보광장 > 공지사항 > 학생소식 게시판 내 별도 안내(8월 초)

### ○ 분할납부 차수별 납부 기간

차수	고지서 출력 기간	등록금 납부 기간
1차	'24. 8. 23.(금) 09:00 ~ 8. 29.(목) 16:00	'24. 8. 26.(월) ~ 8. 29.(목) 09:00 ~ 16:00
2차	'24. 9. 25.(수) 09:00 ~ 9. 27.(금) 16:00	'24. 9. 26.(목) ~ 9. 27.(금) 09:00 ~ 16:00
3차	'24. 10. 15.(화) 09:00 ~ 10. 17.(목) 16:00	'24. 10. 16.(수) ~ 10. 17.(목) 09:00 ~ 16:00
4차	'24. 11. 11.(월) 09:00 ~ 11. 14.(목) 16:00	'24. 11. 12.(화) ~ 11. 14.(목) 09:00 ~ 16:00

※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학교 홈페이지 내 학생 소식란에 공지 예정

### ○ 분할납부 취소 처리

- 각 회차 중 1회라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<u>자동으로 분할납부 허가가 취소</u>되며, <u>다음 차수 등록금 납부 기간 또는</u> 별도 안내받은 등록 기간에 등록금 잔액(기존 납부 금액 제외)을 일괄 납부해야 함 - 학칙 제66조 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



### ■ 등록금 차등납부

### 1. 등록학기 초과자

가. 대상: (학부생) 9학기 이상 등록 대상자 / (대학원생) 수업연한을 지나 수료치 못한 등록 대상자

나. 납부 기간: '24. 9. 26.(목) ~ 9. 27.(금) 09:00 ~ 16:00

다. 수강신청 학점별 납부액

구 분	수강신청 학점	등록금액
학 부 생	1 ~ 3학점	등록금의 1/6 해당액
	4 ~ 6학점	등록금의 1/3 해당액
	7 ~ 9학점	등록금의 1/2 해당액
	10학점 이상	등록금 전액
대학원생	1 ~ 3학점	등록금의 1/2 해당액
	4학점 이상	등록금 전액

### 2. 수료 후 연구생

가. 대상: 「공주대학교대학원 수료후연구생 운영 규정」에 따른 수료 후 연구생

나. 납부 기간: '24. 9. 26.(목) ~ 9. 27.(금) 09:00 ~ 16:00

다. 등록금액: 수업료 2 \* 1/10에 해당하는 금액(천원미만 절사)

## ■ 등록금 반환 기준

### 1. 관련 근거

가.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

나. 공주대학교 학칙 제 112조(등록금의 반환)

2. 반환 기준

제112조(등록금의 반환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(개정 2011.2.22.)

- 1. 법령에 따라 입학(재입학, 편입학을 포함한다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<개정 2023.1.17.>
- 2.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
- 3. 재학중인 학생이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
- 3의2.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<신설 2011. 11. 23.>
- 4.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
- 5.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<신설 2023. 1. 17.>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1. 17.>
- ④ 제2항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. <개정 2011. 2. 22., 2011. 11. 23.>

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해당 학기 개시일(신 · 편입생의 경우 입학일) 전일 까지	등록금 전액
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	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	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	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	반환하지 아니함